

#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-제28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03. 30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·군·구 조직 개편에 따라 2007. 2. 20자 개정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 
기구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“기획담당관” 을 “기금업무담당부서장” 으로 개정함(안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)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및 제20조제2항중 “기획담당관”을 각각 “기금업무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사천시보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기획담당관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 「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중 “기획담당관”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「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 “기초생활담당주사”를 “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④ 「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중 “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중 “기획담당관” 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 으로 한다

⑥ 「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사회복지” 를 “주민생활지원” 으로 한다.

⑦ 「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도시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” 을 “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” 으로 한다.

⑧ 「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도시건축업무담당과장” 을 “도시과장” 으로 한다.

⑨ 「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기획담당관” 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⑩ 「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중 “도시건축과장” 을 “도시과장” 으로 한다.

⑪ 「사천시건축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중 “도시건축과장” 을 “건축과장” 으로 하고, 제36조제3항 “도시건축과장” 을 “건축과장” 으로 한다.

⑫ 「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중 “기획담당관” 을 “기획감사담당관” 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회계관계 공무원) (생략)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기획담당관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20조(간사 등) ①(생략)</p> <p>②간사는 <u>기획담당관</u>으로 하며,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7조(회계관계 공무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기금업무담당부서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<u>기금업무담당부서장</u>으로 하며,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~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# 【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】
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·정보통신담당관 및 체육지원단을 둔다.<2007.2.20>